

#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

(남재경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75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10월 2일

발 의 자 : 남재경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해경, 주찬식, 김태수, 김창수,  
박진형, 조규영, 김제리, 김정태,  
이종필, 신건택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·관광 콘텐츠 개발 노력을 통해 1,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음
- 향후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문 인력 육성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
- 또한 여러 조례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던 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·규정함으로써 통일적·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‘관광발전기본계획’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)
- 나. 에코투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한옥밀집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관광통계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「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」의 내용을 재규정함(안 제9조)  
(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」는 폐지함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관광사업자”란 「관광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.
2. “한옥밀집지역”이란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.
3. “문화관광해설사”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관광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 (관광발전기본계획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관광발전 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관광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
2. 관광발전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3. 관광발전을 위한 자원확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 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자원

개발, 관광객 피해 및 불편사항의 해소 등 시의 관광발전을 위한 전담 조직 및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·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에코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 (한옥밀집지역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한옥밀집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7조 (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)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·배치·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, 수행능력,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·점검하여야 하며, 관리·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·개발하기 위하여 신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 (관광통계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발전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

에게 공개할 수 있다.

제9조 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의 신청·지급·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 (감독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관광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조례안 제5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, 제6조(한옥밀집지역 등에 대한 지원), 제7조(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), 제8조(관광통계), 제9조(재정지원)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,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가 기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면, 제8조(관광통계)에 따른 비용만 발생

※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(기추진 사업현황은 [붙임2] 참고)

- 조례안 제5조(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, 제6조(한옥밀집지역 등에 대한 지원), 제7조(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), 제9조(재정지원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

## 3. 미첨부 사유

○ 제3조제1항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추계내역은 [붙임1] 참고)

## 4. 작성자

○ 예산정책담당관 정진영 주무관(02-3705-1279)

**[붙임 1] 추계 내역**

- 전제 및 방법
  - 1) 물가상승률 미반영
  - 2) 추계기간 5차년도 이후에도 비용 발생
  - 3) 서울시 주관부서 사업계획 반영

○ 총비용 : 1,35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16)	(2017)	(2018)	(2019)	(2020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관광통계 (제8조)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1,350,000
	소계(b)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1,350,000
□ 총 비용(b-a)	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1,350,000

**가. 관광통계(제8조) 작성**

- 전제
  - 1) 물가상승률 미반영
  - 2) 추계기간 5차년도 이후에도 비용 발생
  - 3) 서울시 주관부서 사업계획 반영
- 비용 : 1,350,000천원
  - 비용 = 연간비용×5년(추계기간)
  - 연간비용: 270,000천원
    - 서울관광(분기별 1회) 간행물 제작 : 100,000천원
    - 외래관광객 실태 및 불편사항 조사 : 17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1차년도 (2016)	2차년도 (2017)	3차년도 (2018)	4차년도 (2019)	5차년도 (2020)	합계
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270,000	1,350,000

[참고] 관광통계(제8조) 작성 비용 산출내역(자료: 주관부서 사업계획서)

○ 「서울관광」 간행물 제작 등(연4회) : 100,000천원

- 연구원 = 75,973천원 = 2,110천원×3명×12월
- 연구보조원 = 5,642천원 = 940천원×1명×6월
- 기타경비(유인물 제작, 소모품비 등) = 16,663천원
- 일반운영비 이내 = 1,720천원(경비의 2%)

○ 외래관광객 실태 및 불편사항 조사 : 170,000천원

- 연구원 인건비 = 35,680천원(책임연구원1, 연구원4, 연구보조원 2)
- 면접원 수당 = 72,000천원 = 18,000원×4,000명
- 동행취재 섭외 = 9,000천원 = 300,000원×10명×3일
- 면접원 교육비 = 144천원 = 12,000원×12명
- 면접원 교통비 = 3,600천원 = 6,000원×12명×50일
- 번역 = 2,880천원 = 60,000원×6페이지×8개 언어
- 검수 = 1,600천원 = 200,000원×8개 언어
- 에디터 수당 = 7,033천원 = 70,334원×5명×20일
- 코팅원 수당 = 7,033천원 = 70,334원×5명×20일
- 편칭비 = 1,200천원 = 150원×2card×4,000명
- 통계프로그램 설계비 = 870천원 = 145,046원×2명×3일
- 답례품비 = 9,600천원 = 2,000원×4,000명×120%
- 설문지인쇄비 = 1,152천원 = 40원×6페이지×4,000명×120%
- 보고서인쇄비 = 1,500천원 = 30,000원×50부
- USB : 20,000원 = 10,000원×2개
- 일반관리비 등 : 16,687천원